# 디지털 브뤼셀 효과 : 한-미 통상협상 변수되나?

**미국 빅테크에 1조 원대 과징금 철퇴 내린 EU**

지난 4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위반을 이유로 미국 빅테크 기업인 Apple과 Meta에 각각 5억 유로(약 8,133억 원)와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11월 발효되고 2023년 5월 시행된 DMA는 기존 반독점법(antitrust law)의 사후적(ex-post) 규제 방식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미리 지정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CPS: Core Platform Service)에 사전적(ex-ante) 규제준수 의무를 부과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은 EU 내 월간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 연매출 75억 유로(약 12조 원) 이상으로, 대부분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2024년 5월 DMA는 7개 게이트키퍼와 23개 핵심플랫폼서비스에 대해 규제준수 의무를 부과했고, 약 1년 간의 조사(non-compliance investigations)를 거쳐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DMA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다.

**DMA의 GATEKEEPER 및 CPS 지정 현황**

| Gatekeeper | Core Platform Service (CPS) |
|---|---|
| Alphabet(美) | Google, Google Maps, Google Play, Google Shopping, Chrome, Youtube, Google Search, Google Android (8개) |
| Amazon(美) | Amazon, Amazon Marketplace (2개) |
| Apple(美) | AppStore, Safari, iOS, iPadOS (4개) |
| Booking(美) | Booking.com (1개) |
| ByteDance(中) | TikTok (1개) |
| Meta(美) | Meta, Facebook, Instagram, Whatsapp, Messanger (5개) |
| Microsoft(美) | Window PC OS, Linkedin (2개) |

* 자료: European Commission

특히 DMA는 게이트키퍼의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서비스 우대 행위(self-preferencing), 사용자 데이터 결합/활용 행위(data combination), 외부 결제 옵션 안내 제한 행위(anti-steering)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Apple의 경우 AppStore에서 개발자가 다른 저렴한 외부 결제 옵션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웹을 통해 앱을 직접 다운로드(sideloading)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Meta는 Facebook과 Instagram에서 '동의 또는 지불'(Consent or Pay)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데이터 결합/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료 구독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각각 DMA 위반 판결을 받았다.

**DMA의 주요 규제항목**

| 규제항목 | 내용 |
|---|---|
| Self-referencing | 게이트키퍼가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 |
| Data Combination |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여러 플랫폼의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 |
| Anti-Steering | 사용자가 외부 결제 옵션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 Discrimination Against Third-Party Software/ Services | 게이트키퍼가 자사 플랫폼에서 타사의 소프트웨어/서비스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 |
| Interoperability Restrictions | 타사 소프트웨어/서비스와의 상호운용성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 Unequal Data Access | 사용자의 데이터를 자사에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타사에게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 Imposing Unfair Contract Conditions | 사용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제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 Restriction on Third-Party App Stores/Sideloading | 타사의 앱스토어 설치를 제한하거나 사이드로딩 (웹을 통한 앱 다운로드)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 자료: European Commission

**대서양 통상갈등과 경제안보 이슈로 비화하는 디지털 규제**

EU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 빅테크 기업과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Meta의 최고 글로벌 이슈 책임자(Chief Global Affairs Officer)이자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고위 관료였던 조엘 카플란(Joel Kaplan)은 DMA가 사실상 '수십억 달러의 관세(multi-billion-dollar tariff)'나 다름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튿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브라이언 휴스(Brian Hughes) 대변인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부과된 DMA 과징금을 두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강탈이며, 미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novel form of economic extortion that will not be tolerated by the United States)"고 논평했다.

사실 이번 과징금 규모 자체는 Apple과 Meta의 전체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회피를 위해 DMA를 미국과 유럽 사이의 무역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이에 호응해 미국 정책 당국도 DMA를 EU의 보호주의로 간주하면서 디지털 규제는 통상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미-중 간 AI 등 디지털 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하는 것처럼 기능하는 DMA가 결국 유럽 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제안보적 우려도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DMA와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 역시 EU 디지털 규제의 핵심 축이다. 2022년 10월 발효되어 2023년 8월 시행된 DSA는 2000년에 제정된 EU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을 현대적으로 개편한 법안이다. DSA는 소셜 네트워크, 앱스토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중개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허위 정보, 유해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특히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의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VLOP: Very Large Online Platform)과 검색엔진(VLOSE: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에는 매년 독립 감사 및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DSA의 규제 대상도 대부분 X(舊Twitter), Facebook, YouTube, Instagram, Google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검색엔진들이다. 미국은 DSA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DMA와 마찬가지로 미-중 간 AI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국과 EU 간의 기술 협력, 특히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주권을 위한 EU의 자강노력**

DMA와 DSA의 입안과 집행을 주도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DMA와 DSA의 목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유럽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디지털 경제에서 유럽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 간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럽 디지털 규제의 이면에는 유럽의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을 수호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GAIA-X와 EuroStack 프로젝트다.

유럽 클라우드 시장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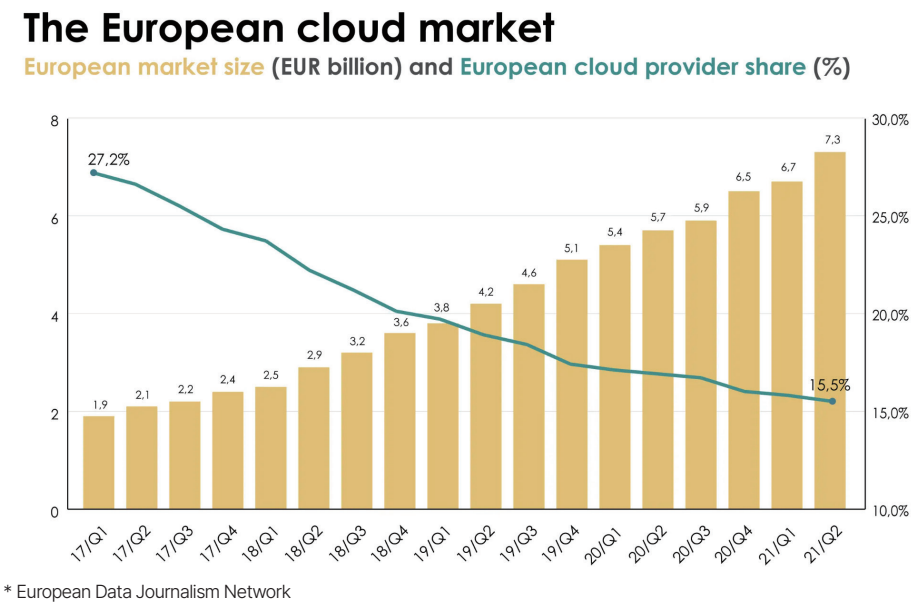


* European Data Journalism Network

GAIA-X는 미국 3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Amazon Web Service, Microsoft Azure, Google Cloud)이 유럽 클라우드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로 출범한 다국적 프로젝트다. 300개 이상의 회원사가 참여하는 GAIA-X는 OVHcloud(佛), T-Systems(獨), Atos(佛) 등 유럽 주요 클라우드 기업을 지원해 유럽 역내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표준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GAIA-X는 관료주의적 비효율성, 회원사 간 갈등 및 의견조율 실패, 유럽 클라우드 기업의 낮은 기술 경쟁력 등으로 인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패배자들의 연합(alliance of losers)'이라는 비판까지도 받고 있다.

EuroStack은 2025년 제안된 EU의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이니셔티브로, GAIA-X의 한계를 보완한 클라우드, AI, 양자컴퓨팅, 위성통신을 포괄하는 통합 전략을 추구한다. GAIA-X가 클라우드 표준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EuroStack은 13억 유로(약 2조 원)를 지원해 공공부문의 유럽산 디지털 기술 채택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EuroStack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로드맵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며, Amazon Web Service 1개 기업 연매출이 850억 달러(약 113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3억 유로 규모의 공공투자가 유럽 디지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의 과제: 규제와 혁신, 보호와 개방 사이의 균형**

EU의 규제모델이 전세계 국가 및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로 인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23년 말 EU의 디지털 규제모델을 참고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안(이하 플랫폼법)을 발표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플랫폼법은 EU DMA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상의 다양한 반경쟁 행위들을 규제해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운영 알고리즘에 대한 개입이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한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내 플랫폼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EU DMA의 Apple과 Meta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가 미국과 유럽 간 통상 갈등으로 비화한 사례처럼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자칫 한-미 간 통상 협상에서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3월 USTR(미국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캐롤 밀러(Carol Miller) 미 하원의원도 작년 9월에 이어 올해 5월 한-미 디지털무역집행법(U.S.-Republic of Korea Digital Trade Enforcement Act)을 재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한국이 미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을 제정 또는 시행할 경우 미국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EU와는 달리 비교적 견고한 국내 플랫폼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EU식 DMA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혁신 역량을 촉진하는 스마트한 규제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규제가 한-미 통상 마찰로 확대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규모나 국적에 치우지지 않은 행위기반 규제를 통해서 중소 사업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의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규제와 혁신, 보호와 개방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해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 FKI